

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8495 판결 [매매대금 확인 청구의소]

전 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 남구 C건물 제1501호에 관하여 2009. 5. 18.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345,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건물 제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 23,000,000원, 관리비 미납금 22,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을 합한 345,00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9. 5. 28. 거래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D은 미등기상태에서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E,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매수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3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97,110,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실제의 양도차익과 달리 과다한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45,000,000원이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북인천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인정한 전제사실이 실제와 달라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그 전제사실을 바로 잡아 정당한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세무관서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을 뿐이고 이는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을 작성한 데에 따른 사실상의 결과이며, 이러한 경우 원고는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3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북인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황여진 판사 이병호